

工業所有權審判事例

國內事件

商標登錄出願拒絕不服

〈大法院 第2部 判決〉(1985. 1. 22)

事件番號 : 83후 14

裁判長 : 이 정 우

關與法官 : 정 태 균 · 신 정 철 · 김 형 기

1. 審判請求人(被上告人) : 미첼다니오드(꾸르부 아시에르 LTD)
2. 被審判請求人(上告人) : 특 허 청 장
3. 原審決 : 特許廳 1983. 1. 28字, 1981年 抗告審判(絶) 第280號 審決
4. 主 文 :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的 負擔으로 한다.
5. 理 由 : 上告理由를 判斷한다.

原審決의 理由에 의하면 原審의 本願商標는 모자를 쓴 사람의 상반신 圖形을 음영으로 도시하였고 그림에 작은 불어활자로 “LOMBRE DE NAPOLEON” 다시 그림에 더 작은 영어활자로 “The Shadow of Napoleon”을 각 표기한 圖形과 文字의 結合商標로서 상품구분 제6류 “프랑스에서 생산된 꼬냑”을 指定商品으로 하는바 위 표기된 불문이나 영문 모두 “나포레온의 그림자”라는 뜻이고 위 圖形은 위 文字의 의미로 인하여 쉽게 “나포레온” 또는 “나포레온의 그림자”를 연상하는 것이라고 본 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指定商品인 “꼬냑”에 있어서 “나포레온”이라는 用語는 관용되는 표장이므로 本願商標는 구상표법(1973. 12. 31 法律 第2659號로써 改正된 것까지) 第8條第1項第2號에 해당한다고 判斷하여 그 登錄을 拒絕한 원사정을 維持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原審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訴訟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判決한다.

◎ 審 決 ◎

항고심판청구인 : 꾸르부아시에르 LTD

대표 엘버트 디온

영국 런던 이씨 2올드슈리흐레드
릭프레이스 1

(공장주소 : 프랑스(샤랑프) 자르
낙쁘라스뒤 샤프 2)

대리인 변리사 : 목 돈 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5-
2(나)

1974年 商標登錄出願 第6490號 거절사정불복
抗告審判 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
한다.

◎ 주 문 ◎

本件 抗告審判 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